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상·음성 원격회의(전화회의 등)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(안 제40조의5)

- 1)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에서 음성 또는 음성과 동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회의방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2) 이에 원격회의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22. ~ 6. 4.)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5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, 당사자, 또는 이해관계인(이하 이 항에서 “위원등”이라 한다)이 음성 또는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의5(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⑦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0조의5(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⑧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, 당사자, 또는 이해관계인(이하 이 항에서 “위원등”이라 한다)이 음성 또는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	
연 락 처	(02) 2110-1625